

告示  
第二號

一  
通(週) 사무소  
관한  
건  
기  
치  
변  
경  
고  
시  
예

시  
정  
규



이 앞 아 온 바 이는 동사우소 신류을 승인 앞  
 동을 들 사 그 공사를 주공행은 새 의 기 리로  
 이 권하는 것이 음격 좌 기 에 의 하여 별 앞  
 (고 시 안) 과 같이 고 시 행은 안 시 행  
 하 을 리 까 재 결을 양 침 행 이 가

기

(중 구 흥 무 로 一 二 가 동 사 우 소

중 권 의 치 중 구 흥 무 로 二 가 九

변 경 의 치 중 구 흥 무 로 二 가 九

(고 시 안)

서울특별시장공시 제 102호  
 서울특별시장각동의 사무소 기치증 (부  
 를)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.

내기 49년 1월 21일

서울특별시장 회 관

구 명	동사무소명	변 경 기 치	종 권 기 치
중 구	중구 흥우로 1-2 가동사무소	중구 흥우로 2가 29	중구 흥우로 2가 9

"안"

각 구 회 장

부 시 장

동등 (가)

수제 (가)

별지와

같이

고사되었으니

양지

하심

관하

—(바)에

주지케 하심

(별지는 고사안을 원송할 것)

"안"

시령과 장

공보와 장 기하

동등 (가)

수제 (가)

별지와

같이

고사되었으니

시보에

제재하여 주심을

은망하시니

(별지는 고사안을 원송할 것)

한  
문  
제  
= 0 三  
부

일  
부  
세  
로  
를  
제  
시  
에  
과  
하  
는  
것

都市計畫集

54



기	전	편	완
호	종	결	

시행상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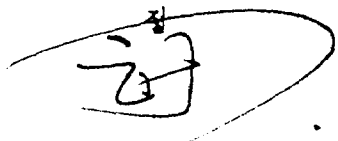
송

지

977

안	주
단기	단기
429	년
년	년
1월	월
16	일
429	시
합교	일발
	송문
	부
장기	
송장	서정
호변	행발

시



부

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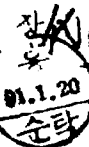


내부국

건설국

국

공공



시정

계획



기안자

한기

결명

일부세도로

폐지에

관한

프

수제 의견 별지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전달된

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(東信化學工業株式會社) 사장

현

현수터<sup>현수</sup> | 으로부터 후<sup>후</sup> 원한 별지도로 폐지원<sup>원</sup>에

대<sup>대</sup>해 현강을 조사한<sup>한</sup>이 별지도<sup>지도</sup>변 풍<sup>풍</sup>시<sup>시</sup>와<sup>와</sup>같은<sup>같은</sup>이

현지<sup>현지</sup> 구<sup>구</sup>위 (周圍) 가<sup>가</sup> 총<sup>총</sup>원<sup>원</sup>인<sup>인</sup> 노<sup>노</sup>유<sup>유</sup>기<sup>기</sup> 공<sup>공</sup>강<sup>강</sup> (工場) 리

어<sup>어</sup>점<sup>점</sup>한<sup>한</sup>은<sup>은</sup>있<sup>있</sup>으며 본<sup>본</sup>도<sup>도</sup>로<sup>로</sup>는 공<sup>공</sup>강<sup>강</sup>의<sup>의</sup>내<sup>내</sup>에<sup>에</sup> 위<sup>위</sup>치<sup>치</sup>한<sup>한</sup>

세<sup>세</sup>도<sup>도</sup>로 (細道路) 로<sup>로</sup>되<sup>되</sup> 일<sup>일</sup>반<sup>반</sup>의<sup>의</sup> 고<sup>고</sup>동<sup>동</sup>은<sup>은</sup> 별<sup>별</sup>도<sup>도</sup>시<sup>시</sup>계<sup>계</sup>획<sup>획</sup>상<sup>상</sup>

별<sup>별</sup>리<sup>리</sup>강<sup>강</sup> 어<sup>어</sup>마<sup>마</sup>은<sup>은</sup> 것<sup>것</sup>으로<sup>으로</sup> 사<sup>사</sup>료<sup>료</sup>되<sup>되</sup>용<sup>용</sup>기<sup>기</sup> 별<sup>별</sup>안<sup>안</sup> (別安)

라<sup>라</sup>갈<sup>갈</sup>이 폐<sup>폐</sup>도 (廢道) 로<sup>로</sup>치<sup>치</sup>고<sup>고</sup>된<sup>된</sup> 것<sup>것</sup>을<sup>을</sup> 양<sup>양</sup>청<sup>청</sup>하<sup>하</sup>나

이<sup>이</sup>리



별안 (교시안)

외울 특별시 교시제 203호

도르헨시 행구구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울

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(文來洞) 2가 36번지

38번지, 50번지, 51번지, 52번지에 지번한 2구도

간도로의 일부분은 이른 폐지한다.

도르헨시에 대한 도면은 당시 건설국 도시계

획과에 비례한 일부분이 ~~도시계~~ 중량부에 공한다

다기 四二九一년 一월 二七

서오름 二로 배로 시 2L 0

이 3

허 21 0

(별곡하(二))

서경제

호

단기 429년

1월

일

부시강

영도도

구청강

앞

건명

스주제 의견

단기 429년

1월

25일

자로

간찰한

귀관내

도신

화강

공음

주식

회사

한수덕

(玄壽德)

으로

부러

출원

된

폐도 (廢通)

신청에

대하여

별지

고시

로써

폐도

결정

되었

의 4 귀향 및 관제 동사무소  
본을 제시하여 관내 일로 반여계  
별리 고시문 사  
27지 철거  
기하시야고.

(정기제안고시문참고부위요)

(별안) (3)

외전제

호

다스기 四三九一년

일월

일월

외전제 四三九一년 1월 1일

외전제 四三九一년 1월 1일

동신화학기 공인된 27석 회시

사상 현 누터

안도

건 명

수제 의 건 다스기 四三九一년 1월 18일에 영등포도

구현을 경유하여 27석 현 한 영등포도 문래도

2가 소재 귀사 공인된 부지 여 점한 일부 27석 간

도로여 대하셔 별리 고시르니  
오 4 양리 하사 아신  
제 도 정음권 하야신

( 권위 제 1 안 고시문 권무 위요 )